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11

발의연월일: 2024. 7. 11.

발 의 자:김기현·박충권·김소희

김석기 · 유상범 · 김 건

박준태 · 김상훈 · 구자근

김선교 · 김형동 · 최은석

유영석 · 서천호 · 박정하

최수진 • 엄태영 • 백종헌

임종득 • 권영진 • 최형두

한기호 • 박성민 • 김상욱

서범수 의원(2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헌국회에서 200명으로 시작한 국회의원 정수는 차츰 늘어나기 시작하여 제13대국회에서 299명까지 늘어났다가 정치개혁 차원에서 제16대국회에서 273명으로 감축된 바 있음.

이후 제17대국회에서는 다시 299명으로 늘어났고, 제19대국회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를 이유로 300명까지 늘어나 현재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 정수 300명의 적정성에 대하여 국민의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상황이며, 비례대표국회의원과 지역구국회의원 간의 전문 성에서 차별화가 점차 없어지는 등 의원 정수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보다 10% 감축한 270명으로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금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지역구국회의원 254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6명을합하여 300명"을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270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의 의원정수는 <u>지역구국회의원</u>	지역구국회의원		
254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6	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u>270명</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